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찬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0
----------	-----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31일

발 의 자 : 유찬중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인제, 김태수, 이신혜,
김영한, 우형찬, 최판술, 이복근,
박성숙, 성중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인”을 “명”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는”으로 하며 “1에”를 “어느 하나에”으로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1인을”을 “한 명을”으로 하고 “15인”을 “열 다섯 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2인을”를 “두 명을”을 한다.

제4조제1항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는”으로 한다.

제6조중 “1인을”를 “한 명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1에”를 “어느 하나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및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u>따라</u> ----- ----- -----.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8조의 규정에 <u>의한</u>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간의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u>부의하는</u> 사항.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 ----- ----- <u>따른</u> ----- ----- ----- ② ----- ----- ----- ----- <u>회의에 부치는</u> -----
제3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u>1인</u> 을 포함하여 <u>15인</u>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u>의한</u>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u>2인</u> 을 포함한다.	제3조 (구성) ① ----- <u>한 명</u> 을 ----- --- <u>열 다섯 명</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따른</u> ----- ----- <u>두 명</u> 을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u>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 ----- <u>총괄</u> 한다.
제5조 (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u>소</u>	제5조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소</u>

<p>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집하려는 ----- ----- ----- ----- <u>긴급하는</u> ----- -----.</p>
<p>제6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제6조 (간사) ----- ----- <u>한 명</u>을 ----- ----- -----</p>
<p>제7조 (위원의 제척)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u>의하여</u> 회피를 <u>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 (위원의 제척) ① ----- <u>어느 하나</u>에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따라</u> -- ----- <u>하려는</u> ----- -----.</p>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유 찬 중